

조세 재정

2017. 10. 31(통권 제59호)

BRIEF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 평가와 정책방향

안종석 선임연구위원(044-414-2210)



BRIEF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 평가와 정책방향*

안종석 선임연구원 (044-414-2210)

I. 연구목적	02
II. 소득수준별 세부담의 국제비교	02
III.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분포	06
IV. 주요 공제항목과 명목세율이 실효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08
V. 정책시사점	15



* 본 조세재정 Brief는 안종석선임연구원이 2016년도에 수행한 연구인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보고서 16-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을 요약·정리한 것으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힘

I 연구목적

- ● 소득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이슈가 있음
 - 장기적으로 현행 조세수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세 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며, 소득세가 세수 증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됨
 -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현행 세제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므로 이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면세자 비율에 대해서는, 2014년 세제개편 이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 이와 같은 정책이슈를 모두 포괄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구간에 대해 실효세율 분포를 파악하고, 실효세부담을 어떻게 개편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그 후에 바람직한 실효세부담 구조가 나올 수 있도록 실효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소들의 개편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 이러한 개편방안 모색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세 소득수준별 세부담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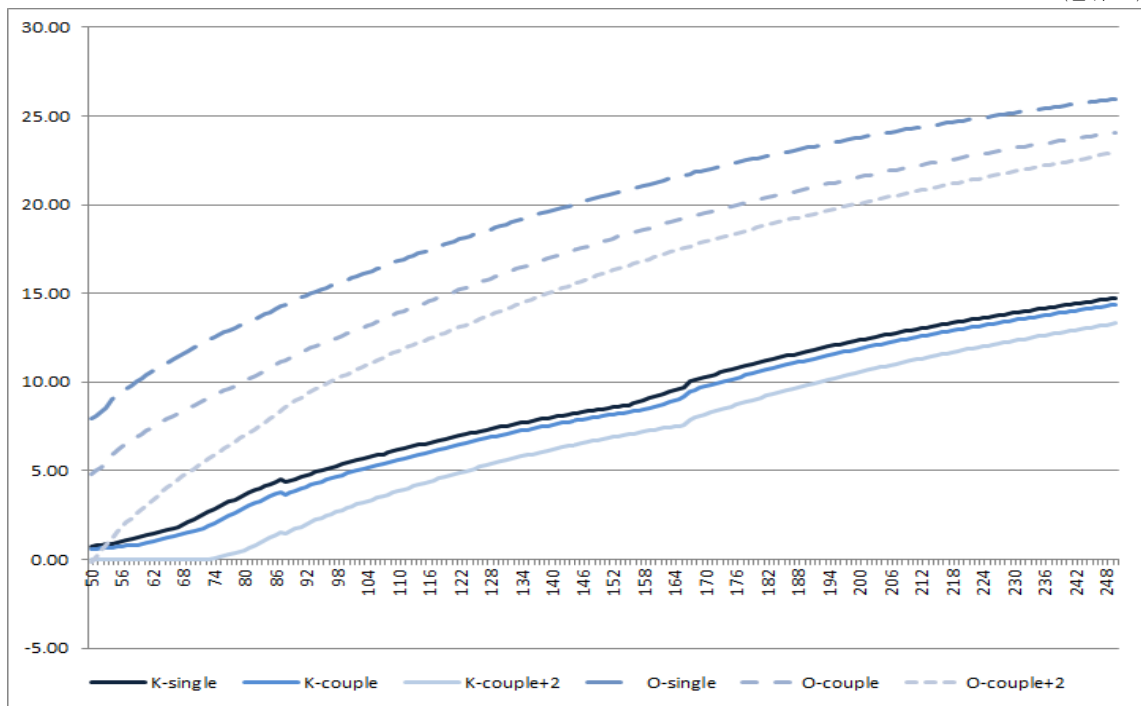
II 소득수준별 세부담의 국제비교

- ● 소득수준별 실효세부담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음
 -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수준을 살펴보았음
- ● 다른 국가와의 비교는 OECD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음
 - 먼저 OECD에서 발간한 *Taxing Wages* 보고서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균임금의 50~250% 구간의 세부담 수준을 살펴보았음

- 그리고 평균임금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최저소득구간에 대해서는 각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제도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그 제도를 적용하여 실효세부담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 또한 최고세율과 최고세율 적용구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음
- 분석 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는 거의 전 소득구간에 걸쳐 실효세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함
- 둘째, 가족 구성원이 증가하면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인하여 실효세율이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치에 비해 부양가족 증가에 따른 세부담 절감 혜택이 적은 편임

[그림 1] 소득세 실효세율의 비교(2014년) - OECD 평균 vs 한국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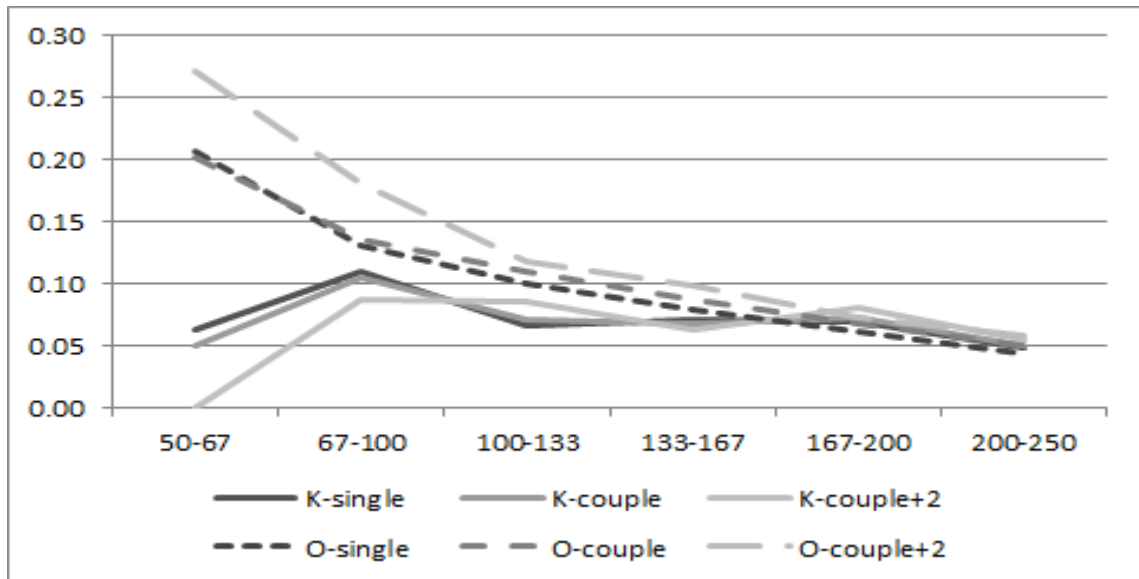
주: 1) single, couple, couple+2는 각각 독신, 부부, 4인 가구를 의미하며, K는 한국, O는 OECD 평균
 자료: OECD(2016), pp.71~107의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재구성

- 셋째, 평균임금 50~250% 구간에서의 소득세 실효세율의 누진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이유를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전반적으로 소득세 부담률이 낮다는 점임
 - 소득 Y_1 이 Y_0 보다 크고, Y_1 과 Y_0 에서의 실효세율이 각각 t_1 , t_0 라고 하면, Y_1 과 Y_0 구간에서의 실효세율 누진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text{실효세율누진도} = \frac{t_1 - t_0}{Y_1 - Y_0}$$

[그림 2] 소득수준별 소득세 실효세율 누진도 변화(2015년) - 한국 vs OECD 평균¹⁾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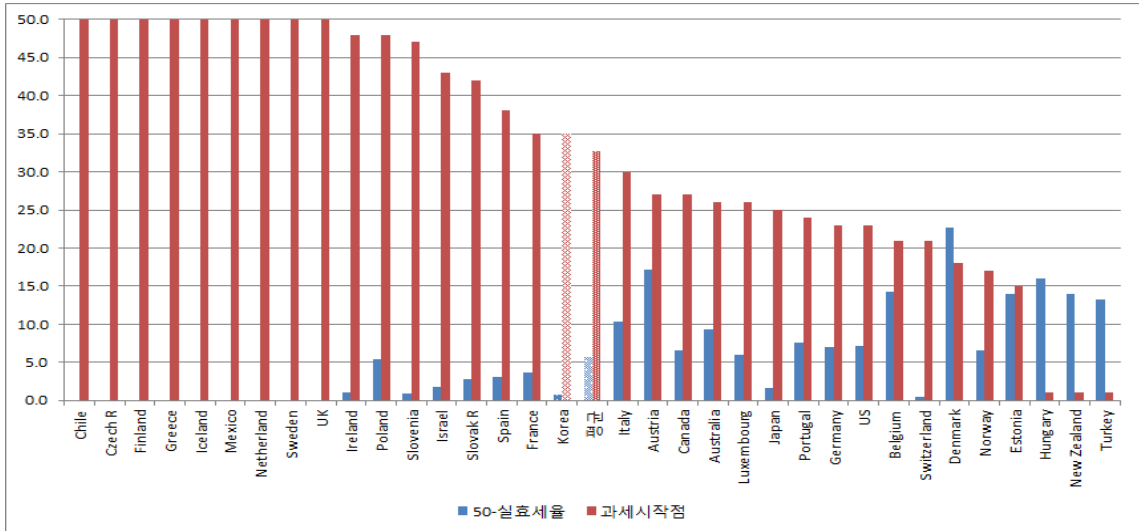


주: 1) single, couple, couple+2는 각각 독신, 부부, 4인 가구를 의미하며, k는 한국, o는 OECD 평균
 자료: OECD(2016), pp.71~107의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 넷째, 면세점과 최저 소득구간에서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제도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양한 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규모가 점감하는 속도가 느린 편임
- 다섯째, 평균임금 50% 이하인 저소득층에서의 우리나라 세부담은 대체로 낮은 편임

[그림 3] 과세시작점과 평균소득 50%에서의 실효세율(2015년) - 독신자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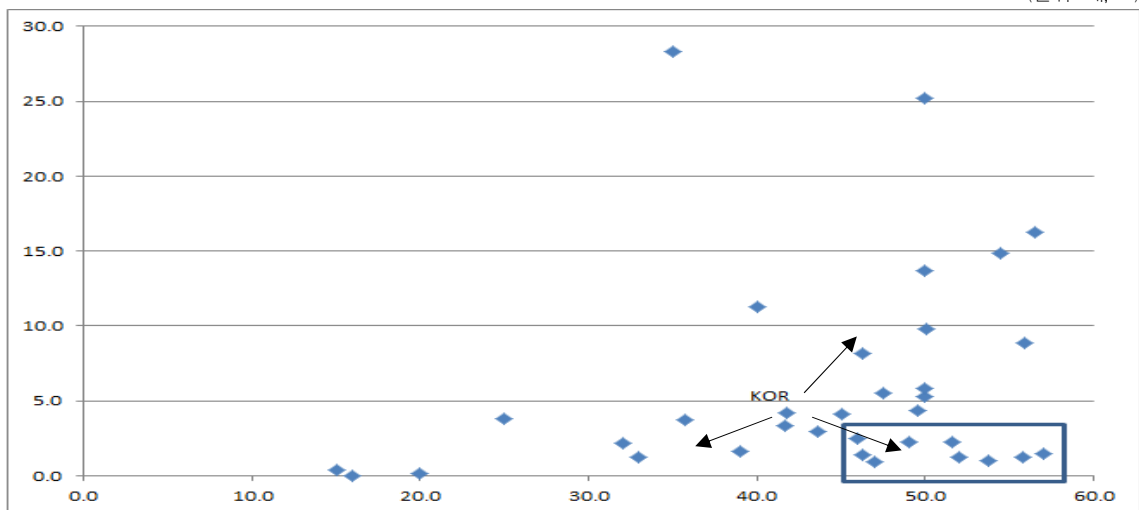


주: 1) 50-실효세율: 평균임금 50%에서의 실효세율
 과세시작점: 실효세율이 0%를 넘는 최저소득의 평균임금 대비 비율
 자료: 저자 계산

- 마지막으로 최고 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보면, 우리나라는 최고세율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모두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4] 소득세(국세+지방세) 최고세율과 적용기준 소득(2015년)

(단위: 배,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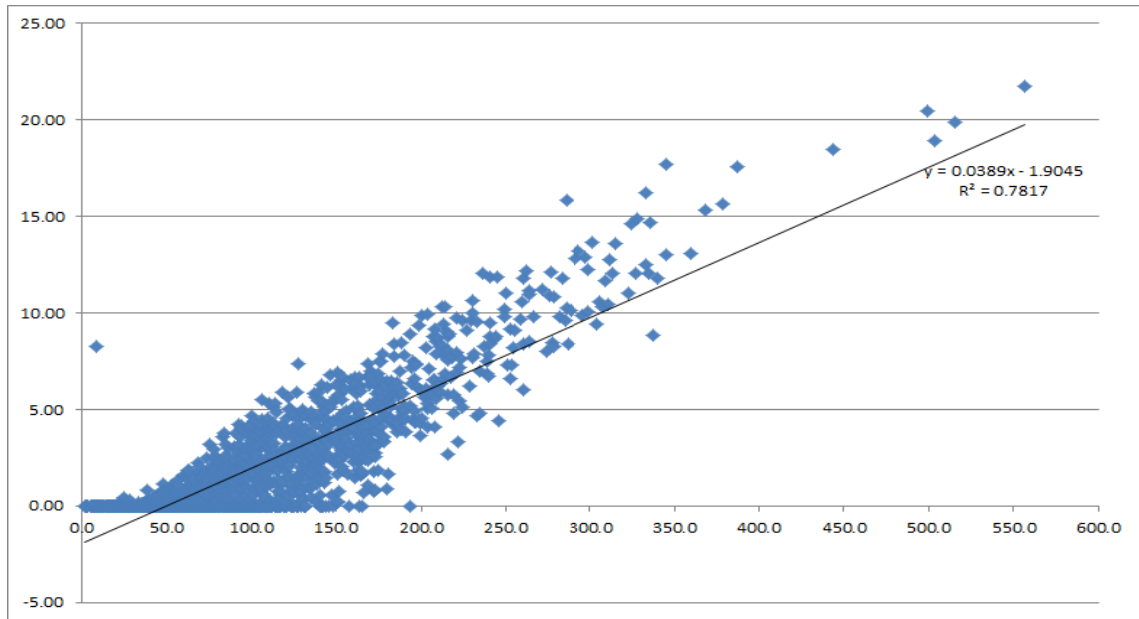
Ⅲ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 분포

- ●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납세자의 소득수준별 세부담 구조를 살펴보았음
 - 재정패널 자료는 국내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시자료 중에서 납세자별 세부담과 각종 공제내역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
 -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증빙자료가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근로소득세 실효세부담 분포를 분석하였음
- ● 재정패널 조사자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표본조사로서 최저소득계층과 최고소득계층이 과소표집되었다는 점인데, 이 문제는 표본조사 자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함
 - 그러므로 재정패널 자료 분석만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는 국세청의 신고자료를 사용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여야 할 것임
- ● 우리나라의 소득수준별 실효세부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면세점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독신자의 경우 대체로 평균임금의 35% 이하이면 대부분 면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평균임금의 75% 이하이면 대부분 면세가 됨 (평균임금의 35%는 대략 1,400만원, 평균임금의 75%는 대략 3천만원 수준임)
- ● 둘째, 소득수준이 같더라도 실효세율 수준의 격차가 클 수 있음
 - 전체 표본을 보면 평균임금의 150% 수준에서 실효세율이 0~7%에 걸쳐 분포되어 최대 7%포인트의 실효세율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가족 구성의 차이임

-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 구성에 따른 실효세율 격차가 2~4%포인트, 가족 구성 외의 공제항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효세율 격차가 2~4%포인트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소득수준별 소득세 실효세율 분포 (2014년)

(단위: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

<표 1> 소득구간별 근로자 분포와 실효세율

(단위: %)

연소득	평균임금 대비 비율 ¹⁾	근로자수 비중		실효세율 ¹⁾		
		재정패널	국세청	전체표본	독신자	4인 가구
2천만원 이하	50	27.9	44.9	0~2	0~2	0
4천만원 이하	100	31.2	28.0	0~5	0~5	0~2
6천만원 이하	150	21.2	13.7	0~7	5~7	2~5
8천만원 이하	200	11.8	7.2	4~10	6~10	4~8
1억원 이하	250	4.4	3.0	7~12	10 이상	10 내외
1억원 초과	250 초과	3.5	3.2	12 이상		10 이상
		100.0	100.0			

주: 1) 평균임금 대비 비율은 소득구간 경계점이 되는 소득의 평균임금 대비 비율을 나타내며, 실효세율은 그 경계점에서의 실효세율 범위를 나타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

- ● 셋째, 실효세율 수준을 보면, 독신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35%, 4인 가구의 경우 평균임금의 75% 수준에서 과세되기 시작하여 소득이 평균임금의 1%만큼 증가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0.057%포인트 정도 실효세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임금의 100% 수준에서 실효세율이 독신자는 5% 이내이고, 4인 가구는 2% 이내임. 독신자는 평균임금의 200%를 넘으면 실효세율이 10%를 넘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50%를 넘으면 실효세율이 10%를 상회함

- ● 넷째,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표본에서 세전소득의 지니계수는 0.366이고,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는 0.350으로 0.016의 격차가 있음
 - 그 격차를 세전소득으로 나눈 것을 지니계수 개선율이라고 하면, 소득세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4.4%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 및 공공부조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8.8%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수치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 및 공공부조의 재분배 효과 중 절반 정도는 소득세가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2〉 소득세의 지니계수 개선효과(2014년)

	세전소득	세후소득	개선율
전체표본	0.366	0.350	0.044
독신자	0.351	0.339	0.032
4인 가구	0.281	0.263	0.065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

IV 주요 공제항목과 명목세율이 실효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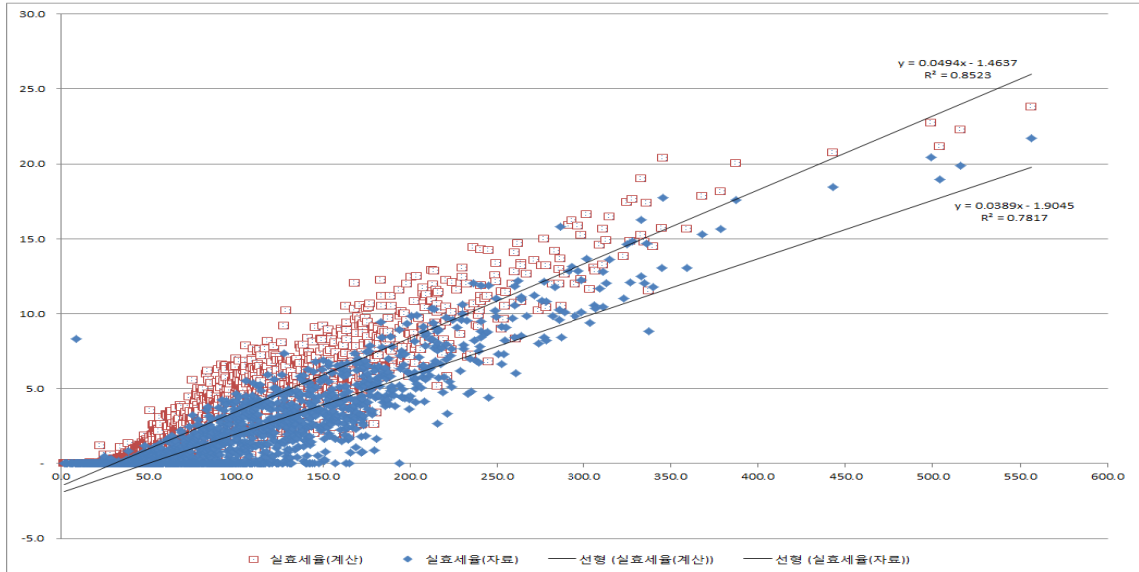
1. 근로소득공제제도

- ● 각종 공제제도 중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공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전 소득 구간에 걸쳐 실효세율을 1.6~3.9%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세수효과도 상당히 크고,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없다면 면세자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제도하에서는 평균임금의 150% 수준에서도 면세자가 발생하는데,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없다면 평균임금의 50%를 넘는 경우에 면세가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현행 공제율을 유지하면서 공제 상한액을 1천만원 또는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음
 -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세수입이 17.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임금의 250%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경우 소득이 낮아지면서 실효세율 상승폭이 축소되어 평균임금 50~100% 구간에서는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임
 - 한편 500만원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를 넘으면 실효세율이 2.3~2.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실효세율 상승효과가 커져서 평균임금의 200~250% 구간에서는 상승 폭이 2.5%포인트가 되었다가, 소득이 더 증가하면 약간씩 상승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세후소득 지니계수는 0.3461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없는 경우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면세점의 변화를 보면, 근로소득공제 상한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면세점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평균임금의 150%를 넘는 고소득층의 세금이 면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공제 상한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0% 이하가 거의 면세되던 것에서 평균임금의 20% 이하면 거의 대부분 면세가 되도록 면세점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그리고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면세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짐

[그림 6] 근로소득공제 상한이 500만원인 경우와 상한이 없는 경우의 실효세율 분포(2014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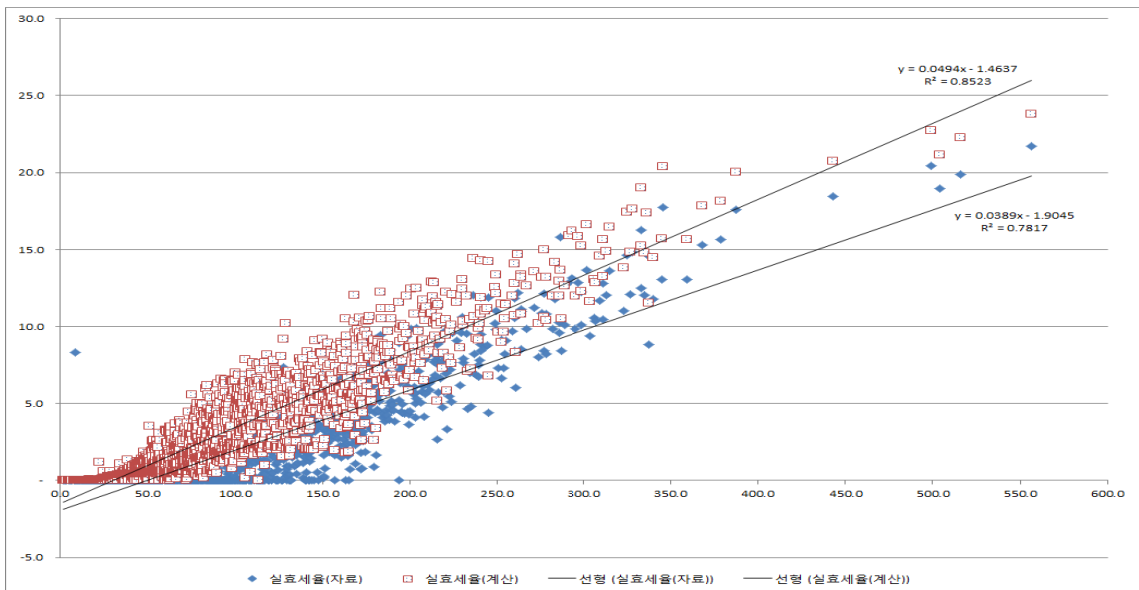
(단위: %)



주: 500만원 상한이 있는 경우의 실효세율 위에 상한이 없는 경우의 실효세율(진하게 칠한 부분)을 덮어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7] 근로소득공제 상한이 500만원인 경우와 상한이 없는 경우의 실효세율 분포(2014년) II

(단위: %)



주: 진하게 칠한 부분이 상한 제한이 없는 경우, 그 위에 덮어쓴 부분이 500만원 상한이 있는 경우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 제공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

〈표 3〉 소득구간별 근로자 분포와 실효세율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영향

(단위: 명, %)

소득의 평균임금 대비 비율	인원수	인원수 비중	실효세율 평균 (현행)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영향 ³⁾		
				제도가 없는 경우	상한 500만	상한 1천만
50 이하	513	27.6	0.1	1.6	0.3	0.0
100 이하	578	31.1	0.6	3.4	1.4	0.1
150 이하	397	21.4	2.2	3.8	2.3	0.7
200 이하	220	11.8	4.4	3.9	2.3	0.9
250 이하	84	4.5	7.5	3.9	2.5	1.1
250 초과	66	3.6	11.9	3.8	2.4	1.2
합계	1,858	100.0				
지니계수 ¹⁾ (개선율)			0.3498 4.4	0.3464 5.3	0.3461 5.4	0.3475 5.1
세수효과 ²⁾				93.5	51.6	17.7

주: 1) 지니계수는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를 의미하며, 세전소득지니계수는 0.3660이고,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전소득 지니계수에서 세후소득 지니계수를 차감한 것을 세전소득 지니계수로 나눈 것임

2) 세수효과는 현행 대비 세수증가율을 나타냄

3) 현행 대비 구간별 실효세율 평균치 변화

자료: 저자 계산

2. 특별공제제도

- 특별공제제도의 경우, 먼저 세수효과를 보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세수효과가 현행 세수입의 6.7%로 추정되고,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세수효과는 9.5%,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는 16.2%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의 세수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는 평균임금의 100~200%에서 실효세율을 0.8%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고, 소득이 평균임금의 200%를 넘으면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50~200% 구간에서 실효세율을 0.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어 중간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50% 이하 계층에서는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증가하면서 실효세율 인하 효과가 커져서 평균임금의 150%를 넘는 경우에는 0.5~0.6%포인트 정도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제도가 역진적인 성격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표 4〉 소득구간별 근로자 분포와 실효세율(2014년) - 주요 특별공제제도의 영향

(단위: 명, %)

소득의 평균임금 대비 비율	인원수	인원수 비중	실효세율 평균(현행)	특별공제제도의 영향 ³⁾		
				신용카드	교육비	보장성 보험
50 이하	513	27.6	0.1	0.1	0.0	0.1
100 이하	578	31.1	0.6	0.5	0.2	0.3
150 이하	397	21.4	2.2	0.8	0.4	0.3
200 이하	220	11.8	4.4	0.8	0.6	0.3
250 이하	84	4.5	7.5	0.7	0.5	0.1
250 초과	66	3.6	11.9	0.4	0.6	0.0
합계	1,858	100.0				
지니계수 ¹⁾ (개선율)			0.3498 4.43	0.3489 4.47	0.3488 4.47	0.3499 4.40
세수효과 ²⁾				16.2	9.5	6.7

주: 1) 지니계수는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를 의미하며, 세전소득지니계수는 0.3660이고,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전소득 지니계수에서 세후소득 지니계수를 차감한 것을 세전소득 지니계수로 나눈 것임

2) 세수효과는 현행 대비 특별공제제도가 없는 경우의 세수증가율을 나타냄

3) 현행 대비 특별공제제도가 없는 경우의 구간별 실효세율 평균치 변화

자료: 저자 계산

3. 명목세율체계

- 명목세율체계의 변화에 따른 실효세부담 변화 효과를 보면, 24%와 35%의 세율을 동시에 3%포인트 인상하는 제1안의 경우에 평균임금보다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는 실효세율에 변화가 없고, 100~150% 구간에서 실효세율이 평균적으로 0.1%포인트 상승함

- 소득이 증가하면서 실효세율 증가폭이 커져서 평균임금의 250%를 상회하는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0.9%포인트 상승함
- 전체적으로 세수입은 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는 0.3487로 소득세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4.43%에서 4.7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5〉 소득구간별 근로자 분포와 실효세율(2014년) - 서울체계 개편시

(단위: 명, %)

소득의 평균임금 대비 비율	인원수	인원수 비중	실효세율 평균 (현행)	서울체계 개편 효과 ³⁾		
				1안	2안	3안
50 이하	513	27.6	0.1	0.0	0.0	0.3
100 이하	578	31.1	0.6	0.0	0.2	0.9
150 이하	397	21.4	2.2	0.1	0.8	1.5
200 이하	220	11.8	4.4	0.2	1.4	1.9
250 이하	84	4.5	7.5	0.4	1.6	2.0
250 초과	66	3.6	11.9	0.9	1.8	2.1
합계	1858	100.0				
지니계수 ¹⁾ (개선율)			0.3498 4.43	0.3487 4.71	0.3464 5.33	0.3466 5.30
세수효과 ²⁾				6.3	23.68	38.58

주: 1) 지니계수는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를 의미하며, 세전소득지니계수는 0.3660이고,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전소득 지니계수에서 세후소득 지니계수를 차감한 것을 세전소득 지니계수로 나눈 것임

2) 세수효과는 개편에 따른 세수증가율을 나타냄

3) 개편 이후의 구간별 실효세율 평균치 변화

제1안: 현행 세율 중 24%와 35%를 각각 3%포인트 인상, 서울구간은 그대로 유지

제2안: 현행 세율 중 15%, 24%, 35%를 각각 3%포인트 인상, 서울구간 유지

제3안: 모든 구간의 세율을 3%포인트 인상, 서울구간 유지

자료: 저자 계산

- 15%와 24%, 35%의 세율을 동시에 3%포인트 인상하는 제2안은 평균임금의 50~100% 구간부터 실효세율을 인상시킴
 -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실효세율 인상폭이 커져서 평균임금의 200~250%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1.6%포인트 상승하고, 250%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1.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는 0.3464로 소득세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5.33%인 것으로 추정됨
- 제1안과 제2안을 비교해 보면, 소수의 최고소득계층에만 적용되는 소득세율 인상은 세수효과도 크지 않고, 최고세율이 인상되는 계층의 명목세율 인상 폭에 비해 실효세율 인상 폭은 상당히 낮아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제한적이 됨
 - 한편 최저소득계층을 제외하고 중저소득계층부터 널리 적용되는 명목세율 인상은 세수효과도 적지 않고, 소득재분배효과도 비교적 큰 편임
- 최저세율인 6%의 세율을 포함하여 모든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은 평균임금의 50% 이하인 최저소득계층의 실효세율을 0.3%포인트 상승시키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실효세율 상승폭이 커져서 평균임금 250% 초과구간에서는 실효세율 2.1%포인트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는 0.3466으로 제1안에 비해서는 다소 높을 것으로 보임. 제2안과 제3안을 비교해 보면 제3안이 더 보편적인 세율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제1안과 제2안의 차이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적으며,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도 제2안보다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V 정책시사점

- ●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시사점으로 제일 먼저 면세점과 면세자 비율의 축소를 분리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면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 또는 평균임금 대비 일정 비율을 설정하여, 소득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면세를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한편 면세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가 될 가능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여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할 것임
- ●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면세점보다는 면세자 비율의 더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면세점을 지난 이후의 실효세율 누진도가 낮아서, 소득이 면세점보다 높은 근로자들도 한 두 가지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쉽게 면세가 됨
 - 재정패널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평균임금의 150~170%가 되는 경우 즉, 소득이 6천만~7천만원이 되는 경우에도 면세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두 번째로 제시한 정책방향은 근로소득공제제도의 개편임
 -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없는 경우, 상한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경우,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 모의실험을 하였음
 - 물론 제도가 없는 경우에 세수 증대효과가 가장 크고, 면세자 비율 축소효과도 가장 크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은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면세자 비율의 경우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평균임금의 150%까지 면세자가 발생하는 데 비해 근로소득공제 상한을 500만원으로 제한하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소득구간에서는 면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세율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세율체계 개편은 소기의 목적 즉, 세수의 증대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세율을 인상하므로 세수입이 증대되고 고소득층의 세부담만 증대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작을 가능성이 큼
- ● 한편 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대상을 확대하면 세수효과도 증대되고,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도 강화될 것임
 - 그리고 면세점을 축소하지 않고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그러나 실효세율 인상의 대상을 모든 소득계층을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경우에는 세수 증대 효과는 계속되지만 포괄범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재분배 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보임
- ● 특별공제제도 중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교육비 세액공제제도는 소득이 평균임금의 150% 이상인 고소득층에서 세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비교적 커서 역진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제도의 합리성 즉, 필요성 등 논리적 근거를 다시 검토하고 개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마지막으로 소득세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포괄적인 개편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음
 - 본 연구에서 검토한 다양한 개편방안은 각각 실효세율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방안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효과가 있음
 - 그러므로 소득세제 개편은 전체를 종합하여 실효세율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세수효과, 재분배 효과, 면세자 비율 및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함

- 특히 현 단계에서 소득세 개편 요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소득구간에서의 실효세율 증대를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증대시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야 하며, 중간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세부담을 더 많이 증대시켜 소득세의 재분배기능도 강화해야 함
 - 그러므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실효세부담 구조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실효세부담 구조가 나올 수 있도록 세율체계와 공제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및 각 년도.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제1편 총괄편 - 조세부담률, 세수입 구조』, 2015a.
- _____,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연구 제2편 - 세목별 발전방향』, 2015b.
- 김우철,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분석」, 『제4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pp. 5~30.
- 성명재, 「인구·가구 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KERI Insight, KERI 정책제언 15-06, 2015.
- _____,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재정학연구』, 제9권 제2호, 2016, pp. 47~77.
- OECD, *Revenue Statistics 2015*, 2015.
- _____, *Taxing Wages 2014-2015*, 2016.
-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ranslated by Arthur Goldhammer, Harvard University, 2014.

〈신문기사〉

- 한국경제신문, 「표에 밀리는 면세자 축소」, 2016. 7. 13.
- 매일경제신문, 「작년 연말정산 파동에 면세자 급증」, 2016. 7. 12.

〈홈페이지〉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 _____, Revenue Statistics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 _____, Tax Database,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ABLE_I1
- 통계청 홈페이지,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06&inputYear=2016>



BRIEF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 평가와 정책방향

2017. 10. 31(통권 제59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123
 - 팩 스 : 044-414-2129
 - 인쇄처 : (주)아미고디자인
-

